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6.3.3. (목) 16:30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3. 제안 이유

-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비·성수기 차등 적용하고,
- 도민대상수상자, 명예도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을 추진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사항 등을 정하고,
-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우선예약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정의 용어 변경(안 제2조)

- 도민, 명예도민, 도민대상수상자, 가족친화인증 기업·기관 재직자

나. 시설사용료 조정(안 제3조)

- 시설사용 요금을「성수기 및 주말」과「비수기 주중」으로 차등 적용

다. 시설사용료의 감면 범위 개정(안 제5조)

- 적용범위 추가 :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50% 감경

라. 숙박시설 우선예약 대상 및 범위 개정(안 제6조)

- 숙박시설 20% 이하에 한하여 도민,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·기관 재직자에 대한 우선예약 시행

마. 시설사용료 반환 처리기한 규정(안 제7조)

- 시설사용료 반환시 7일 이내 예약자 지정 계좌로 입금

바. 시설사용료 감경 처리방법 규정(안 제7조)

- 시설사용일 현장 증빙 및 감경금액 당일 반환 입금

사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(안 제7조,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에 차등 적용함은 물론 도민대상수상자, 명예도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경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예우 사항 등을 규정하고,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우선예약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조례 개정 후 2016년 7월 1일부터 동 조례를 적용할 경우 예년에 비해 시설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